

도 시 철 도 건 설 규 칙
일 부 개 정 법 률 안

기 관 명 (부서명)	국토교통부 (철도투자개발과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

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시철도 승강장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야하므로 시·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승강장의 주위에 기둥 또는 계단 등 승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3항 중 “기둥이나 계단”을 “기둥 또는 계단 등 승강시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1조(승강장의 너비) ①·② (생략)	제31조(승강장의 너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·도지사등은 해당 지역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강장의 너비를 기준 이하로 하거나 승강장의 주위에 <u>기둥이나 계단</u> 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둥 또는 계단 등 승강시설</u> -- -----.